

別市女學生生活教育院의 性格, 特性, 規模 등을 감안하여 女學生生活教育院을 獨立 條例로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科學教育院設置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機關名稱을 서울科學教育院에서 서울特別市科學教育院으로 변경하고 둘째,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에서 獨立 條例로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設置目的, 位置, 經費負擔 等 內容上 問題點이 없고, 서울特別市科學教育院의 性格, 特性, 規模 등을 감안하여 科學教育院을 獨立 條例로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教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教育機資材修理整備所의 利用對象學校의 범위를 서울特別市管內의 公·私立의 高等學校 이하 各級學校로 하여 보다 분명하게 規定하고 둘째, 副所長의 補任職列 및 職級名을 現行 地方機械技佐에서 地方機械事務官 또는 地方電氣事務官으로 하고 셋째, 現 條例에 規定된 下部組織에 關한 事項을 教育規則에 委任하고 넷째, 教育機資材修理整備所의 運營과 關하여 教育費特別會計에서 부담하는 費用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規定하고, 기타 불합리한 事項을 整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教育機資材修理整備所의 利用對象學校의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規定하고, 副所長의 補任職列을 現任 機械職으로 하고 있으나 電氣職列을 추가하여 複數 職列로 하고, 職制에 關한 事項은 規則으로 委任하며, 기타 불합리한 事項을 整備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案이라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本 條例審査를 위하여 懇談會를 開催하는 등 深度 있는 審査를 한 結果,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女學生生活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科學

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고, 서울特別市學生教育院設置條例案은 修正可決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審査報告書에 의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報告드린 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教育院設置條例廢止條例案과 서울特別市學生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女學生生活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科學教育院設置條例案, 서울特別市教育機資材修理整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5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關한교육원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關한교육원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경비부담)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안 제5조를 안 제6조로 한다.

<p>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진취적 기상을 기르며,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자질과 품성을 지닌 미래지향의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위치)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에 둔다.</p> <p>제 3 조(원장) ①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 4 조(야외교육장) ①학생교육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원에 야외교육장을 둔다. ②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대성의 집</td> <td>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td> </tr> <tr> <td>천마의 집</td> <td>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번지의 1호</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대성의 집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	천마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번지의 1호	
명 칭	위 치						
대성의 집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						
천마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번지의 1호						
<p>제 5 조(경비부담)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 6 조(시행규칙) 학생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에 서울학생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타의 서울학생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학생교육원에서 실시된 연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p>	<p>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이하 “여학생생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위치) 여학생생활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5번지에 둔다.</p> <p>제 3 조(원장) ①여학생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 4 조(경비부담) 여학생생활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비,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 5 조(시행규칙) 여학생생활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에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타의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p>						
<p>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여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심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지혜로운 여성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p>							